

의안번호	2218277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6.4.27.
추계번호	26B2128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(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등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에 대해 지도·점검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2	안 제18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경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21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발굴·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6조의2(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등)	—	·미대상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「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지침」 제27조 ¹⁾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에 대해 지도·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18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1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)		

1) 「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지침」

제27조(관리·감독)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적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 결과 양성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요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(안 제18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, 시책 마련 및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한국환경보전원에서는 법정대행사업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수행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34억 2,000만원임

[표 1] 환경교육전문가 양성사업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6 예산
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(1533-323)	전문인력양성 (환경교육 전문가 양성)	·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지원 ·환경교육 인턴십 운영 ·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운영 ·환경교육 수행인력 역량 강화 훈련 제공 ·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반 관리 ·기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한 자료 제작, 홍보 등	3,42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고 수행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
□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(안 제21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발굴·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마련할 경우, 시책 마련 및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 제21조²⁾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수환경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5,000만원임

[표 2]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6 예산
한국환경보전 원 출연 (1533-323)	환경교육 (사회환경교육 제도 운영)	·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 운영: 5,000만원 - 프로그램 신규 지정: 3,000만원 - 프로그램 컨설팅 : 500만원 - 지원단 직무연수 : 1,500만원	5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발굴·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행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·확산을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
- 2) 제21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-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 있거나 개발·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.
-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